

##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
『식품위생법』 제101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 합니다.

1. 제 목 :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
2. 처분근거 : 식품위생법 제41조(식품위생교육)제1항 및 제101조(과태료)
3. 공고기간 : 2016. 05. 09. ~ 2016. 05. 23.(15일간)
4. 의견 제출 종료일 : 2016. 05. 23.
5. 당사자 및 과태료 처분예정사항

업종	업소명	영업주	소재지	사 유	처분내용
식품제조가공업	영농조합법인 청양효산	최종민	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청신로 567-31	2015년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미 수료	과태료 20만원

### 6. 고지사항

- 위 당사자는 2016.05.23.일까지 충청남도 청양군 민원봉사실 위생팀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울러 위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으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.

7. 본 처분에 대한 문의 : 청양군 민원봉사실 위생팀 ☎(041)940-2183 신재일

2016년 05월 04일

청 양 군 수

